

(사)대한치과의사협회 2025년 치과종합보험 안내 - 지부소속회원

■ 2025 치과 종합보험 계약사항 및 문의처

- 상품명 : 치과 종합보험(비즈니스종합보험 및 영업배상책임보험)
- 보험사 : 한화손해보험(주간사)/ 현대해상화재보험(참여사)
- 보험계약자 : 대한치과의사협회
- 피보험자 : 대한치과의사협회 소속 회원
- 계약기간 : 2025.11. 1. ~ 2026.10.31.(1년간 / 매년 갱신 필요)
- 가입처 : 엠피에스(MPS) (Tel. 02-742-3345 / Fax. 02-2179-8527)
- 보험료 입금처 : 우리은행 1005-703-009722 대한치과의사협회
- 사고접수처 : 고려손해사정 김고은 담당 (Tel.02-6272-2850 / Fax. 02-730-2816)

1. “치과 종합보험”은 비즈니스종합보험과 영업배상책임보험을 조합한 상품이며 ‘한화손해보험 + 현대해상화재보험’ 컨소시엄(주간사 : 한화손해보험)형태로 운영합니다.
2. “치과 종합보험” 상품이란? 치과 병·의원이 소유·관리하는 재산(건물, 시설 등)이 화재, 폭발, 풍수재, 급배수 설비누출 등으로 발생한 재물손해를 보상하는 비즈니스종합보험과 치과 병·의원이 소유·사용·관리하는 시설에서 발생한 우연한 사고로 제3자에게 신체 및 재물손해(화재 및 배수관 누수 등)를 입혔을 경우, 발생하는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보상하는 영업배상책임보험을 조합한 상품입니다.

3. 보장내용

구분	가입대상	내용	자기부담금
비즈니스 종합보험	피보험자가 소유, 관리하는 재산(건물, 인테리어, 의료장비 등)	화재, 폭발, 도난, 연기, 풍수재, 급배수설비 누출 등을 가입금액 한도내 보상	10만원 단, 수침손의 경우 5백만원
영업배상 책임보험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관리하는 시설	우연한 사고로 제3자의 신체 및 재물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 발생하는 법률상 배상책임 및 기타손해 보상 -대인: 1인당/1사고당 5억원 한도 -대물: 1사고당 10억원 한도 단, 수침손의 경우 50백만원	10만원

4. 2025년도 보험요율 및 기타 조건

구분	보험요율	기타(할증조건 등)
재물손해 (비즈니스종합보험)	0.0307%	“유사고자 할증” 신설 (단, 배상책임에 한함) - 대 상: 사고접수 2건 이상 및 1천만원 이상 보상받은 피보험자 배상책임 - 할증율: 차년도 계약시 적용보험료의 30% 할증
배상책임 (영업배상책임보험)	5,164원	

5. 재물손해(비즈니스종합보험)의 장점

구분		단체보험	일반 화재보험
보상기준	보상기준	실손보상(80% 이상 부보조건)	비례보상
	건물	재조달가액 기준	짓가 기준
요율적용	건물급수	단일급수	건물 해당급수 적용
	업종	단일업종	건물내 최열급 업종
단체할인율	적용여부	적용	미적용
기본담보 범위	재물손해	화재, 폭발, 도난, 급배수설비 누출손해, 풍수재, 파손, 지진 등	화재, 낙뢰
가입편의성	보험료 산출	가입금액, 보상한도액, 면적만으로 산출 가능	건물 구조 및 층별 업종파악, 스프링클러 설치유무 등 기재

※ 인테리어 및 집기비품(의료장비 포함) 짓가 보상

6. 보험료산정 방법 및 예시(평균 가입금액기준)

- 아래 내용은 평균 가입액 기준으로 작성된 예시입니다. 귀 회원이 보유하고 있는 재물, 시설, 기기보유기간 등이 보험금 산정에 반영되므로 예시된 보험금과 상이 할 수 있습니다.

① 재물손해 및 시설배상 가입금액

구분	재물손해 (비즈니스종합보험)					배상책임 (영업배상책임보험)
	㉠건물	㉡인테리어	㉢집기비품	㉣의약품	합계 ㉠+㉡+㉢+㉣	보장내용
99m ² (30평)	1.2억	1억	1.5억	3천만	4억	-대인(인당/사고당) 5억원 한도 -대물(1사고당) 10억원 한도
132m ² (40평)	1.6억	1억	1.5억	4천만	4.5억	
165m ² (50평)	2억	1억	1.5억	5천만	5억	

※ 면적은 건축물대장 기준이며, 건물 가입금액은 평당 4백만원 기준임.

※ 단체보험 가입은 사전 신청 받을 수 있으며, 계약기간은 2025.11. 1.~ 2026.10.31.임(매년 갱신).

② 각 예시별 산정 보험료

(단위: 원)

구분	99m ² (30평)/ 4억	132m ² (40평)/ 4.5억	165m ² (50평)/ 5억
재물손해(A) (비즈니스종합보험)	122,800	138,200	153,500
배상책임(B) (영업배상책임보험)	154,900	206,600	258,200
납입보험료(A+B)	277,700	344,800	411,700

* 재물손해(비즈니스종합보험)=(건물+인테리어+집기비품+의약품)x0.0307%

* 배상책임(영업배상책임보험)=3.3m² 당x5,164원

③ 배상책임(영업배상책임보험) 사고자 할증 관련

. 계약자 A : 사고접수2건, 5백만원 수령 ▶ 2025년도 갱신시 적용보험료 30%할증 미적용
. 계약자 B : 사고접수1건, 2천만원 수령 ▶ 2025년도 갱신시 적용보험료 30%할증 미적용
. 계약자 C : 사고접수2건, 1천만원 수령 ▶ 2025년도 갱신시 기본보험료 30%할증 적용
. 계약자 D : 사고접수3건, 5천만원 수령 ▶ 2025년도 갱신시 적용보험료 30%할증 적용

※ 주요 면책사항

1. 비즈니스종합보험

- 1) 원인에 관계없이 누출, 오염 및 오탁과 관련된 파괴나 손해 및 비용
- 2) 피보험자의 기타 장비를 피보험자의 특정적이고도 의도적인 지시에 따라 당해 설계 허용치 및 안전한도를 초과하여 고의적이고 지속적으로 운전한 경우
- 3) 전복, 침하, 사태, 토양의 수축이나 팽창 또는 침식
- 4) 마모, 마멸, 점진적인 악화, 부식, 침식, 금속 피로 현상, 산화, 자동산화, 습기, 온도나 습도의 변화, 공기 또는 빛의 작용, 자연발열 혹은 건조
- 5) 발효, 증발, 중량의 감소, 오염이나 품질의 변화
- 6) 장비의 조작 실패, 고장, 운전불량, 교착, 붕괴, 파열
- 7) 전류의 단락, 자체발열, 누전, 과전류, 과부하 또는 과전압
- 8) 잔존물제거 및 청소비확장담보조항에서 담보하지 않는 청소비용
- 9) 저장탱크, 용기, 기타 수용기기 내 수용물의 누출 또는 넘침, 제품의 소각

2. 영업배상책임보험

- 1) 피보험자가 예기하였거나 피보험자의 고의로 발생한 "신체장해" 또는 "재물손해"
- 2) 계약에 의하여 가중된 신체장해나 재물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3) 근로자 재해보상, 불구폐질급부 또는 실업에 관한 법률, 기타 이와 유사한 법률에 따라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책임
- 4) 피보험자의 근로자가 업무 수행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입은 "신체장해"
- 5) 공해 물질의 배출, 확산, 방출 또는 유출이 있었거나, 있었다고 주장되거나 또는 있을 위험 때문에 발생한 "신체장해"나 "재물손해"
- 6) 정부 기관의 지시 또는 요청에 의하여 귀하가 공해물질의 시험, 검사, 청소, 제거 용기에 담아 봉하거나 처리, 독성제거, 중화 작업으로 발생한 손실, 기타비용
- 7) 피보험자가 소유, 관리, 사용 또는 타인에게 위탁한 항공기와 "자동차" 또는 피보험자가 소유, 운행, 임차한 선박으로 생긴 "신체장해"와 "재물손해"
- 8) 다음으로 기인하는 "신체장해" 또는 "재물손해"
 - (a) 피보험자가 소유, 운행, 임차하는 "자동차"에 의한 "이동장비"의 운송
 - (b) "이동장비"를 시합, 속도경기, 해체경기의 연습, 준비 또는 곡예운전에 사용
- 9) 선전포고의 유무에 불구하고 전쟁 또는 전쟁에 수반되는 사태로 생긴 "신체장해"나 "재물손해"
- 10) 아래의 "재물손해"
 - (a) 귀하가 소유, 임차 또는 점유하는 재물
 - (b) 귀하가 판매, 양도 또는 포기한 시설로서 "재물손해"가 그 시설의 일부에서 발생할 때
 - (c) 귀하가 임차하는 재물
 - (d) 귀하의 보관, 관리 또는 지배하에 있는 동산
 - (e) 귀하 또는 귀하를 대신하는 도급인 또는 하도급인이 직,간접을 불문하고 작업을 하는 부동산의 특정부분의 손해가 그 작업에서 발생하였을 경우
 - (f) "귀하의 작업"이 부적절하였기 때문에 복구,수리,교환을 해야만 하는 재물의 특정부분
- 11) "귀하의 생산물" 또는 그 일부에 기인하여 "귀하의 생산물"에 끼친 "재물손해"
- 12) "생산물/완성작업위험"이 포함된 "귀하의 작업" 또는 그 작업의 일부에서 발생한 "귀하의 작업"에 끼친 "재물손해"
- 13) "손상재물" 또는 물리적 손상을 입지 않은 재물손해로서 아래의 사유에 기인하는 경우
 - (a) "귀하의 생산물" 또는 "귀하의 작업"의 결함, 불비, 부적절 또는 위험한 상태
 - (b) 귀하나 귀하의 대리인의 계약상의 이행지체 또는 불이행
- 14) 사용 불능, 회수, 철수, 조사, 수리, 교환, 조정, 제거, 처분으로 귀하 또는 다른 사람이 입은 손실, 경비 또는 지출에 대한 손해배상
- 15) 손해액에 대한 배상청구가 있을 때 보험가입 유무를 불문하고 강제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
- 16) 아래의 전문직업위험을 포함하여 귀하가 귀하를 위하여 수행하는 모든 전문직업으로 발생하는 "신체장해", "재물손해", "인격침해" 또는 "광고침해"
 - (a) 지도, 도면, 의견서, 보고서, 측량, 변경요구서, 설계서 혹은 설계명세서
 - (b) 감독, 검사 또는 기술용역제공

17) 아래의 기인된 "신체장해", "재물손해", "인격침해" 또는 "광고침해"

(a) 피보험자나 피보험자를 위한 시험검사, 가치평가, 자문이나 권고의 실수나 결함

(b) 시험검사, 가치평가, 자문이나 권고 사항에 대하여 구두나 서면에 의한 보고

18) 손해배상청구, 조사, 조정, 기술용역, 검사, 감정, 측량 또는 회계업무로 발생하는 "신체장해", "재물손해", "인격침해" 또는 "광고침해"

19) 벌금, 과료 또는 형벌이나 징계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0) 방사선 동위원소의 사용이외에 피보험자가 원자력시설을 소유하거나 사용 관리중에 위험한 핵 물질에 의하여 발생하는 사고